한국 유네스코학교 활동 운영 지침

[2020. 10. 1. 시행] [2020. 9. 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한민국 내 유네스코학교 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국내 유네스코학교 및 전현직 관리자·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국내 유네스코학교 활동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9. 21〉

1. “유네스코학교”란 유네스코본부로부터 유네스코학교네트워크(UNESCO Associated Schools Network, 이하 “네트워크”라 한다) 가입 승인을 받은 국내 소재 학교를 말하며, “회원교”로 지칭할 수 있다. 다만, 재난 상황 또는 유네스코본부 사정으로 가입 심사가 어렵거나 1년이상 지연되는 경우 위원회가 국내 활동에 한하여 “유네스코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2. “유네스코학교 활동”이란 유네스코학교가 유네스코의 이념과 가치를 지향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각종 사업과 활동을 말한다.
3. “지역협의회”란 지역의 특색에 맞는 유네스코학교 활동 증진을 위하여 시도 교육청별로 해당 지역 유네스코학교 전현직 관리자·담당 교원 및 교육청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4. “국가조정관”이란 유네스코본부의 지침에 따른 국가별 네트워크의 운영 및 관리 실무 담당자를 말한다.

제4조(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역할) ① 대한민국 내 네트워크 및 유네스코학교 활동을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내에 국가조정관을 둔다.
② 제1항의 국가조정관은 유네스코학교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유네스코학교의 자율적인 참여와 활동을 장려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이 유네스코학교 활동을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과 관련하여 네트워크 또는 유네스코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생, 교원, 교육행정가 등의 국내외 연수
2. 유네스코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활동 및 행사
3. 국내외 학교 간 및 국가 간 교류 활동
4. 교수·학습방법, 학습자료의 연구 및 개발
5. 기타 유네스코학교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유네스코학교의 자격) 국내 소재 유치원, 초·중·고, 교육대학, 사범대학 등은 유네스코학교가 될 수 있다. 〈개정 2020. 9. 21〉

제6조(네트워크 가입 및 승인) ① 위원회는 연 1회 기간을 정하여 네트워크 가입 신청을 받는다.
② 제5조의 학교 중 네트워크 가입을 원하는 학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가입신청서는 네트워크 가입 목적, 학교의 목표 및 정책, 담당 교원 지원 방안, 학부모 및 교원 대상 연수 계획, 교육 환경, 유네스코학교 활동 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의 가입신청서를 토대로 심사단의 평가를 거쳐 예비 회원교를 선정한다.
⑤ 예비 회원교로 선정된 학교는 네트워크 온라인 툴(online tool for ASPnet)을 통하여 의향서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유네스코본부의 최종 가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최종 가입 승인 전에도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국내활동에 한하여 “유네스코학교”가 될 수 있다. 〈개정 2020. 9. 21〉

제7조(평가) 제6조제4항의 평가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심사단을 구성한다. 다만, 대상 학교 소재지 지역협의회 의견을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유네스코학교의 의무) ① 유네스코학교는 적어도 1명 이상의 담당 교원을 두어야 한다.
② 유네스코학교는 유네스코본부와 위원회의 네트워크 관련 협력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유네스코학교는 네트워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승인 다음해부터 연간 활동계획서 및 보고서(현황 및 실태 조사에 대한 응답 포함)의 제출
2. 유네스코학교 총회, 지역협의회 등 유네스코학교 활동 및 행사 참여
3. 전 학교 차원에서 유엔/유네스코 기념일 축하 행사 실시
4. 네트워크 현판 부착
5. 기타 위원회가 유네스코학교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유네스코학교는 네트워크 로고를 변형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지역협의회) ① 위원회는 네트워크의 자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도 교육청, 유네스코학교 관리자 및 전현직 교원로 구성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행사 및 회의 개최를 위한 장소 제공에 협조할 수 있다.

제10조(갱신, 제명 등) ① 위원회는 유네스코학교를 대상으로 5년마다 제8조제3항에서 정한 활동이나 과업의 수행 여부 등을 평가한 후 네트워크 회원자격의 갱신 여부를 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결과, 유네스코학교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학교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유네스코본부에 그 학교의 제명을 권고하여야 한다.
③ 네트워크 탈퇴를 원하는 학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공식적인 탈퇴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단, 탈퇴의 효력은 탈퇴의사가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 후에 발생한다.
④ 위원회는 학교가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네트워크 현판을 회수하여야 한다.
⑤ 제7조의 규정은 갱신 또는 제명 권고를 위한 평가에 준용한다.

제11조(보칙)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사무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2019.1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네트워크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위원회로부터 유네스코학교로 인증받은 학교로서 이 지침 시행 후 유네스코학교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학교는 이 지침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이 지침 제6조에 따른 네트워크 가입을 완료하여야 한다.

부칙 (2020.9.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네트워크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가입 신청한 학교는 이 지침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